|  |  |  |
| --- | --- | --- |
|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관리법**  2012년 6월 30일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7차 회의 통과  **제1장 총 칙**  **제1조** 출입국관리를 규율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의 주권, 안전 및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대외거래와 대외개방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한다.  **제2조** 중국공민의 출입국, 외국인의 출입국, 외국인의 중국 경내 체류와 거류 관리, 그리고 교통운송수단의 출입국 국경수비 검사는 이 법을 적용한다.  **제3조** 국가는 중국공민의 합법적 출입국 권익을 보장한다.  중국 경내에서 체류하는 외국인의 합법적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중국 경내 외국인은 중국 법률을 준수하여야 하며, 중국의 국가안전을 해치고 사회공공이익을 손상하고 사회공공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 공안부, 외교부는 각 자의 직책범위에 따라 출입국 관련 사무를 관리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주재 대사관, 영사관 또는 외교부의 위임을 받은 기타 외국주재기구(이하 외국주재 사증발급기관이라 함)는 경외의 외국인의 입국사증 발급을 책임지고 처리한다. 출입국 변방검사기관은 출입국 국경수비 검사를 책임지고 실시하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공안기관 및 그 출입국관리기구는 외국인의 체류 및 거류 관리를 실시한다.  공안부, 외교부는 각 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공안기관 출입국관리기구,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외사부서에 외국인의 입국, 체류 및 거류 신청수리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공안부, 외교부는 출입국사무관리 중에서 업무조율을 보강하여야 하며, 아울러 국무원 유관부서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각 자의 직책 분담에 따라 법에 의해 그 직권을 행사하고 책임을 진다.  **제5조** 국가는 통일적인 출입국관리정보플랫폼을 구축하여 유관 관리부서 간의 정보공유를 실현한다.  **제6조** 국가는 대외개방 출입국항에 출입국 변방검사기관을 설립한다.  중국공민, 외국인 및 교통운송수단은 대외개방 출입국항을 통하여 출입국을 하여야 하며, 특수한 상황에서는 국무원 또는 국무원의 위임을 받은 부서에서 비준한 곳에서 출입국을 할 수 있다. 출입국 인원과 교통운송수단은 마땅히 출입국 변방검사를 받아야 한다.  출입국 변방검사기관은 출입국항 한정지역에 대한 관리를 실시한다. 국가안전과 출입국관리의 질서유지에 필요한 경우 출입국 변방검사기관은 출입국 인원의 휴대물품에 대하여 변방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필요 시 출입국 변방검사기관은 출입국 교통운송수단의 적재화물에 대하여 변방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나 이런 경우에는 해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공안부, 외교부는 출입국관리의 필요에 따라 국무원의 비준을 얻고 출입국 인원의 지문 등 인체생물 식별정보를 남기는 데 대하여 규정할 수 있다.  외국정부에서 중국공민의 사증발급, 출입국 관리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중국정부는 상황에 비추어 상응하는 대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 출입국관리 직책을 수행하는 부서와 기구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서비스와 관리수준을 끊임없이 제고시키고 법을 공정하게 집행하며, 효율적이고 편의하고 안전하고 간편한 출입국 질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2장 중국공민의 출입국**  **제9조** 중국공민이 출입국을 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여권 또는 기타 여행증명서를 신청하여야 한다.  중국공민이 기타 국가나 지역으로 가는 경우에는 방문국가의 사증 또는 기타 입국허가서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중국정부와 기타 국가정부 간에 상호 사증면제 협정을 체결하였거나 또는 공안부, 외교부에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중국공민이 선원 신분으로 출입국하거나 외국의 선박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마땅히 법에 따라 선원 신분증명서를 취득하여야 한다.  **제10조** 중국공민이 내륙과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 사이에서 왕래하거나, 또는 중국공민이 대륙과 대만지역 사이에서 왕래하는 경우에는 마땅히 법에 따라 통행증을 수령하여야 하며 아울러 이 법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이 규정한다.  **제11조** 중국공민이 출입국을 할 때에는 출입국 변방검사기관에 본인의 여권이나 기타 여행증명서 등 출입국증명서를 제시하여 검사를 받고 규정한 수속을 이행하여야 하며, 검사에 통과된 경우에야 출입국을 할 수 있다.  여건을 구비한 출입국항의 출입국 변방검사기관은 중국공민의 출입국에 특별통로 등의 편의 조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2조** 중국공민이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출국을 금지한다.  (1) 유효한 출입국증명서를 소지하지 않았거나 또는 변방검사를 거부하거나 도피하는 경우  (2) 징역형의 집행이 아직 끝나지 않았거나, 또는 형사사건의 피고, 피의자에 속하는 경우  (2) 미결 민사사건이 있어 인민법원으로부터 출국을 금지당한 경우  (3) 국(변)경 관리를 방해하여 형사처분을 받았거나, 또는 불법출국, 불법거류, 불법취업으로 인해 기타 국가나 지역으로부터 송환되어 출국금지 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경우  (4) 국가안전과 이익을 해칠 수 있다고 인정되어 국무원 유관 주관부서로부터 출국 금지를 당한 경우  (5) 법률, 행정법규에서 출국을 금지하는 기타 상황.  **제13조** 국외에 정착한 중국공민이 귀국 정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국하기 전에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주재 대사관, 영사관 또는 외교부에서 위임한 기타 외국주재기구에 신청하여야 하며, 또는 그 본인이나 국내 친지를 통하여 정착하고자 하는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교민사무부서에 신청할 수도 있다.  **제14조** 국외에 정착하는 중국공민이 중국 경내에서 금융, 교육, 의료, 교통, 전신, 사회보험, 재산등기 등 사무를 처리하는 데 신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여권으로 그 신분을 증명할 수 있다.  **제3장 외국인의 출입국**  **제1절 사 증**  **제15조** 외국인은 입국하기 전에 외국주재 사증발급기관에 사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6조** 사증은 외교사증, 예우사증, 공무사증, 일반사증으로 구분한다.  외교, 공무로 인해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외교, 공무사증을 발급하며, 신분이 특별하여 예우가 필요한 외국인에 대하여는 예우사증을 발급한다. 외교사증, 예우사증, 공무사증의 발급범위와 발급방법은 외교부에서 규정한다.  업무에 종사하거나 학습, 친지방문, 관광, 비즈니스 활동, 인재유치 등의 비 외교, 공무사유로 인하여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상응하는 종류의 일반사증을 발급한다. 일반사증의 종류와 발급방법은 국무원이 규정한다.  **제17조** 사증 기재항목에는 사증종류, 소지자 성명, 성별, 출생연월일, 입국 횟수, 입국유효기간, 체류기간, 발급일자와 장소, 여권 또는 기타 국제여행증명서 번호 등이 포함된다.  **제18조** 외국인이 사증을 신청 시에는 해외주재 사증발급기관에 본인의 여권이나 기타 국제여행증명서, 그리고 신청사유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해외주재 사증발급기관의 요구에 따라 해당 수속을 처리하고 면회를 받아야 한다.  **제19조** 외국인이 사증을 신청할 때 중국 경내의 단위나 개인의 초청장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 신청인은 해외주재 사증발급기관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초청장 발급단위나 개인은 초청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20조** 인도적 사유로 긴급 입국이 필요한 경우, 입국초청을 받고 긴급 비즈니스, 공사 응급수리에 종사하거나, 또는 기타 긴급입국 사유가 있으며 출입국항에서 사증을 신청하는 데 동의한 유관 주관부서의 증명서류를 소지한 외국인은 국무원의 비준을 받고 입국사증 업무를 처리하는 출입국항에서 공안부의 위임을 받은 출입국항 사증발급기관(이하 출입국항 사증발급기관이라 함)에 도착비자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입국관광을 조직하는 여행사는 출입국항 사증발급기관에 단체관광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이 출입국항 사증발급기관에 사증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출입국항 사증발급기관의 요구에 따라 본인의 여권이나 기타 국제여행증명서, 신청사유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수속을 밟아야 하며, 아울러 신청한 출입국항으로 입국하여야 한다.  출입국항 사증발급기관이 발급한 사증은 1회 입국에 유효하며, 사증에 명기한 체류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21조** 외국인이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증발급을 거부한다.  (1) 강제퇴거를 당하거나 국외로 송환되어 아직도 입국금지 기간 내인 경우  (2) 엄중한 정신상 장애, 전염성 폐결핵 또는 공공위생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기타 전염병이 있는 경우  (3) 중국의 국가안전과 이익을 해치거나 사회공공질서를 파괴하거나, 또는 기타 불법 범죄활동에 종사할 가능성이 경우  (4) 사증을 신청할 때 허위를 날조하거나 또는 중국 경내 체류기간의 소요비용을 보장할 수 없는 경우  (5) 사증발급기관이 제출하도록 요구한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6) 사증발급기관이 사증발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상황.  사증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사증발급기관은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2조** 외국인이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증을 면제할 수 있다.  (1) 중국정부와 기타 국가정부 간에 체결한 상호 사증면제협정에 의거하면 사증면제대상에 속하는 경우  (2) 유효한 외국인 거류증명서를 소지한 경우  (3) 환승 탑승권을 소지하고 국제여행 항공기, 선박, 기차를 이용하여 중국을 경과하여 제3국이나 지역에 가는 경우, 중국 경내에서의 체류시간이 24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출입국항도 떠나지 아니하거나, 또는 국무원이 비준한 특정구역 내에서의 체류시간이 규정기한을 초과하지 아니할 경우  (4) 국무원이 사증면제에 대하여 규정한 기타 상황.  **제23조**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외국인이 임시 입국이 필요한 경우에는 출입국 변방검사기관에 신청하여 임시 입국수속을 밟아야 한다.  (1) 외국 선원 및 그 수행가족이 항구 소재도시에 상륙하는 경우  (2) 이 법 제22조 제(3)호에서 규정한 인원이 항구를 떠나야 하는 경우  (3) 불가항력이나 기타 긴급한 사정으로 인해 임시 입국이 필요한 경우.  임시입국 기간은 15일을 초과할 수 없다.  임시입국 수속을 신청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출입국 변방검사기관은 외국인 본인, 그가 입국 시에 이용한 교통운송수단의 책임자 또는 교통운송수단 출입국업무 대행업체에 필요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2절 출입국**  **제24조** 외국인은 입국할 때 출입국 변방검사기관에 본인의 여권이나 기타 국제여행증명서, 사증 또는 기타 입국허가증명서를 제시하여 검사를 받고 규정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검사에 통과된 후에야 입국할 수 있다.  **제25조** 외국인이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국을 거부한다.  (1) 유효한 출입국증명서를 소지하지 않았거나 변방검사를 거부, 도피하는 경우  (2) 이 법 제21조 제1항 (1)호부터 (4)호에서 규정한 상황에 해당되는 경우  (3) 입국 후 그가 소지한 사증종류와 어긋나는 활동에 종사할 염려가 있는 경우  (4) 법률, 행정법규에서 입국 금지를 규정한 기타 상황.  입국을 거부하는 경우 출입국 변방검사기관은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6조** 입국을 거부한 외국인에 대하여 출입국 변방검사기관은 귀환하도록 명령하여야 하며, 귀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강제조치를 취하여 귀환시킨다. 외국인은 귀환 대기기간에 한정구역을 떠날 수 없다.  **제27조** 외국인은 출국할 때 출입국 변방검사기관에 본인의 여권이나 기타 국제여행증명서 등 출입국증명서를 제시하여 검사를 받고 규정한 수속을 이행하여야 하며, 검사에 통과된 경우에야 출국할 수 있다.  **제28조** 외국인이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출국을 금지한다.  (1) 형사처분을 받아 아직도 집행 중이거나 또는 형사사건의 피고, 범죄용의자에 속하는 경우. 다만 중국과 외국 간에 체결한 관련 협정에 따라 형사판결을 받은 자를 이관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2) 미결 민사사건이 있어 인민법원에서 출국을 금지하는 경우  (3) 노동자의 노동보수를 체불하여 국무원 유관부서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에서 출국을 금지하는 경우  (4) 법률, 행정법규에서 출국을 금지하는 기타 상황.  **제4장 외국인의 체류와 거류**  **제1절 체류와 거류**  **제29조** 외국인이 소지한 사증의 체류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 사증 소지자는 사증과 그에 기재된 체류기간 내에 중국 경내에서 체류할 수 있다.  사증 체류기간을 연장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사증에 기재된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7일 전에 체류지 현급 이상 인민정부 공안기관 출입국관리기구에 신청하고 요구에 따라 신청사유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심사를 거쳐 연장 이유가 충분하고 합리한 경우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하며, 체류기간 연장을 불허하는 경우에는 기한 내에 출국하여야 한다.  사증 체류기간의 누계 연장기간은 사증에 기재된 기존의 체류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30조** 외국인이 지닌 사증에 입국 후 거류증명서 수속을 해야 한다고 기재된 경우에는 입국 후 30일 내에 거류지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공안기관 출입국관리기구에 외국인 거류증명서를 신청하여야 한다.  외국인이 거류증명서를 신청할 때에는 본인의 여권이나 기타 국제여행증명서, 그리고 신청사유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시에 지문 등 인체생물 식별정보를 남겨야 한다. 공안기관 출입국관리기구는 신청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내에 심사를 실시하고 결정하여야 하며, 거류사유에 따라 상응하는 종류와 기간의 외국인 거류증명서를 발급한다.  외국인의 취업 거류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최단 90일, 최장 5년이며, 비취업 거류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최단 180일, 최장 5년이다.  **제31조** 외국인이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외국인 거류증명서 발급을 거부한다.  (1) 소지한 사증종류가 외국인 거류증명서 발급상황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  (2) 신청 중에 거짓사실을 날조한 경우  (3)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4) 중국의 관련 법률, 행정법규를 위반하여 중국 경내에서 거류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  (5) 사증발급기관이 외국인의 거류증명서 발급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상황.  국가 규정에 부합되는 특수인재, 투자자 또는 인도적 등의 사유로 인해 체류를 거류로 변경하여야 하는 외국인은 구를 설치한 시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공안기관 출입국관리기구의 비준을 거쳐 외국인 거류증명서를 받을 수 있다.  **제32조** 중국 경내에서 거류하는 외국인이 거류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거류증명서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30일 전에 거류지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공안기관 출입국관리기구에 신청하고 요구에 따라 신청사유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심사를 거쳐 연장 이유가 합리하고 충분한 경우 거류기간 연장을 허가하며, 거류기간 연장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한 내에 출국하여야 한다.  **제33조** 외국인 거류증명서의 등기항목에는 소지자의 성명, 성별, 출생일자, 거류사유, 거류기간, 발급일자와 장소, 여권 또는 기타 국제여행증명서 번호 등이 포함된다.  외국인 거류증명서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 사증 소지자는 등기사항이 변경된 날로부터 10일 내에 거류지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공안기관 출입국관리기구에 변경신청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 사증면제로 입국한 외국인이 사증면제 기한을 초과하여 중국 경내에서 체류하여야 하는 경우, 외국 선원 및 그 수행가족이 중국 경내에서 체류할 때 항구 소재도시를 떠나야 하거나 또는 외국인 체류증명서 수속이 필요한 기타 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외국인 체류증명서를 신청하여야 한다.  외국인 체류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최장 180일이다.  **제35조** 외국인이 입국한 후 그가 소지한 일반사증, 체류 또는 거류증명서가 훼손, 분실, 도난을 당하거나 또는 국가 규정에 부합되는 사유가 있어 교체 또는 보완 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체류 또는 거류지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공안기관 출입국관리기구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36조** 공안기관 출입국관리기구의 일반사증 연장, 교체 또는 보완발급 거부, 외국인 체류 또는 거류증명서 발급거부, 거류기간 연장거부 결정은 최종 결정이다.  **제37조** 외국인이 중국 경내에서 체류 또는 거류를 할 때에는 체류 또는 거류 사유에 부합되지 않는 활동에 종사할 수 없으며, 규정한 체류 또는 거류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출국하여야 한다.  **제38조** 만 16세 외국인이 중국 경내에서 체류 또는 거류할 때에는 본인의 여권 또는 기타 국제여행증명서, 외국인 체류, 거류증명서를 휴대하여 공안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중국 경내에서 거류하는 외국인은 규정한 시간 내에 거류지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공안기관에 외국인 거류증명서를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39조** 외국인이 중국 경내 여관에서 숙박하는 경우 여관은 여관업 치안관리 관련 규정에 따라 그 숙박등기 수속을 처리하여야 하며, 아울러 소재지 공안기관에 외국인의 숙박등기 정보를 송부하여야 한다.  외국인이 여관 밖의 기타 주소에서 거주하거나 숙박하는 경우에는 입주 후 24시간 내에 본인 또는 외국인을 숙박시킨 자가 거주지 공안기관에 가서 등기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40조** 중국 경내에서 출생한 외국영아는 그 부모 또는 대리인이 영아가 출생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영아의 출생증명서를 소지하고 부모의 체류 또는 거류지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공안기관 출입국관리기구에서 영아의 체류 또는 거류등기 수속을 밟아야 한다.  외국인이 중국 경내에서 사망한 경우 그 가족, 감호인 또는 대리인은 규정에 따라 당해 외국인의 사망증명서를 소지하고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공안기관 출입국관리기구에 신고하고 외국인 체류 또는 거류증명서를 말소하여야 한다.  **제41조** 외국인이 중국 경내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취업허가와 취업 거류비자를 취득하여야 한다.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취업허가와 취업 거류비자를 취득하지 아니한 외국인을 사용할 수 없다.  외국인의 중국 경내 취업 관리방법은 국무원이 규정한다.  **제42조** 국무원 인력자원사회보장 주관부서, 외국전문가 주관부서는 국무원 유관부서와 회동하여 경제사회의 발전수요와 인력자원 수급상황에 비추어 외국인의 중국 경내 취업 지도목록을 제정하고 정기적으로 조정한다.  국무원 교육주관부서는 국무원 유관부서와 회동하여 외국 유학생의 고학관리 제도를 제정하여 외국 유학생의 고학 일자리범위와 기한에 대하여 규정한다.  **제43조** 외국인이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불법 취업에 속한다.  (1) 규정에 따라 취업허가와 취업 거류증명서를 취득하지 못하였음에 불구하고 중국 경내에서 취업한 경우  (2) 취업허가 한정범위를 벗어나서 중국 경내에서 취업한 경우  (3) 외국 유학생이 고학관리 규정을 위반하고 규정한 일자리 범위나 기한을 벗어나서 중국 경내에서 취업한 경우.  **제44조** 국가안전, 공공안전 유지의 필요에 따라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은 외국인, 외국기구가 일부지역에 거주 또는 사무실을 설립하는 것을 제한하며, 이미 설립한 경우에는 기한부 철거하게 할 수 있다.  허가를 받지 않고서 외국인은 외국인을 제한하는 구역에 진입할 수 없다.  **제45조** 외국인을 채용하거나 외국인 유학생을 모집한 단위는 규정에 따라 소재지 공안기관에 관련 정보를 보고하여야 한다.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서 외국인의 불법입국, 불법거류, 불법취업 상황을 발견하였을 경우에서 지체 없이 소재지 공안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6조** 난민의 지위인정을 신청한 외국인은 난민의 지위를 확인하는 기간에 공안기관이 발급한 임시 신분증명서를 소지하고 중국 경내에서 체류할 수 있으며, 난민으로 인정받은 외국인은 공안기관에서 발급한 난민 신분증명서를 소지하고 중국 경내에서 체류, 거류할 수 있다.  **제2절 영주거류**  **제47조** 중국의 경제사회발전에 뚜렷한 공헌을 하거나 기타 중국 경내 영주거류 조건에 부합되는 외국인은 본인이 신청하고 공안부의 비준을 받아 영주거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외국인의 중국 경내 영주거류 심사비준 관리방법은 공안부, 외교부에서 국무원 유관부서와 회동하여 규정한다.  **제48조** 영주거류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은 영주 거류증명서를 지참하고 중국 경내에서 거류하고 취업하며, 본인의 여권과 영주 거류증명서를 소지하고 출입국을 할 수 있다.  **제49조** 외국인이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공안부는 그 중국 경내의 영주거류 자격을 취소한다.  (1) 중국의 국가안전과 이익을 해치는 경우  (2) 강제퇴거를 당한 경우  (3) 허위를 날조하여 중국 경내에서의 영주거류 자격을 취득한 경우  (4) 중국 경내에서의 거류시간이 규정한 기한에 미달한 경우  (5) 중국 경내에서의 영주거류가 부적합한 기타 상황.  **제5장 교통운송수단의 출입국 변방검사**  **제50조** 출입국 교통운송수단이 출입국항을 떠나거나 도착 시에는 변방검사를 받아야 한다. 교통운송수단의 입국 변방검사는 제일 먼저 도착한 출입국항에서 실시하며, 교통운송수단의 출국 변방검사는 맨 마지막에 떠나는 출입국항에서 실시한다.  출국 교통운송수단은 출국검사를 받은 후부터 출국하기 전까지, 입국 교통운송수단은 입국 후부터 입국검사를 받기 전에 출입국 변방검사기관이 규정절차에 의하여 실시하는 허가를 득하지 않고서는 승무원이나 승객의 승선과 하선, 화물과 물품의 적하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제51조** 교통운송수단 책임자 또는 교통운송수단 출입국업무 대행업체는 규정에 따라 사전에 출입국 변방검사기관에 입국, 출국 교통운송수단의 출입국항 도착과 떠나는 시간, 체류장소를 보고하고 직원, 여객, 화물 또는 물품 등 정보를 여실하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2조** 교통운송수단 책임자, 교통운송수단 출입국업무 대행업체는 출입국 변방검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고하고 조사처분에 협조하여야 한다.  입국 교통운송수단에 입국이 금지된 자를 태운 경우 교통운송수단 책임자는 그 귀환을 책임져야 한다.  **제53조** 출입국 변방검사기관은 규정에 따라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출입국 교통운송수단에 대하여 감호를 실시한다.  (1) 출국 교통운송수단은 출국 변방검사를 시작한 후부터 출국 전까지, 또는 입국 교통운송수단은 입국 후부터 입국 변방검사가 완료되기 전까지의 기간  (2) 외국선박이 중국 내 하류에서 항행하는 기간  (3) 감호를 실시해야 하는 기타 상황.  **제54조** 물품적재, 유지보수작업, 견학방문 등 사유로 인해 외국선박의 승선과 하선이 필요한 인원은 출입국 변방검사기관에 승선증명서를 신청하여야 한다.  중국선박과 외국선박 또는 외국선박 간에 합동작업이 필요한 경우 선장이나 교통운송수단 출입국업무 대행업체는 출입국 변방검사기관에 선박 연결수속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55조** 중국 경내에 있는 외국선박, 항공기는 규정 노선과 항로에 따라 운행하여야 한다.  출입국 선박, 항공기는 대외개방 출입국항 그 밖의 지역에 진입할 수 없다. 불가예측 긴급 상황이나 불가항력적 사류로 인해 진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부근의 출입국 변방검사기관 또는 현지 공안기관에 보고하여 감호와 관리를 받아야 한다.  **제56조** 교통운송수단이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출입국을 금지하며, 이미 출입국항에 진입한 경우에는 되돌아가도록 명령한다.  (1) 출입국항을 떠나거나 도착 시 검사를 받지 않고 제멋대로 출입국을 한 경우  (2) 비준을 받지 않고 제멋대로 출입국항을 변경한 경우  (3) 출입국이 금지된 인원을 태운 용의가 있어 검사 확인이 필요한 경우  (4) 국가안전, 이익 또는 사회공공질서를 해치는 물품을 적재한 용의가 있어 검사 확인이 필요한 경우  (5) 출입국 변방검사기관의 관리를 거부하는 기타 상황.  전 항에 열거한 상황이 없어진 후 출입국 변방검사기관은 관련 교통운송수단을 지체 없이 통과시켜야 한다.  **제57조** 교통운송수단 출입국업무를 대행하는 업체는 출입국 변방검사기관에 비안(備案)하여야 한다. 업무대행에 종사하는 인원은 소속업체에서 출입국 변방검사기관에서 비안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6장 조사 및 송환**  **제58조** 이 장에서 규정한 당장신문(訊問), 계속신문, 구류심사, 활동범위 제한, 송환출국조치는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공안기관이나 출입국 변방검사기관에서 실시한다.  **제59조** 출입국 관리를 위반한 용의가 있는 인원에 대해서는 당장에서 신문할 수 있으며, 당장 신문을 거쳐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가 있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계속 신문할 수 있다.  (1) 불법 출입국 용의가 있는 경우  (2) 타인의 불법 출입국을 협조한 용의가 있는 경우  (3) 외국인이 불법거류, 불법취업 용의가 있는 경우  (4) 국가안전과 이익을 해치고 사회공공질서를 파괴하거나 기타 불법 범죄활동에 종사한 용의가 있는 경우.  당장 신문과 계속 신문은 《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경찰법》의 규정 절차에 따라 진행하여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공안기관 또는 출입국 변방검사기관에서 출입국 관리를 위반한 용의가 있는 인원을 소환하는 경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60조** 외국인이 이 법 제59조 제1항에서 규정한 상황중의 하나가 있고 당장 신문 또는 계속 신문을 거쳐도 여전히 용의를 제거할 수 없어 진일보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구류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구류심사를 실시할 때에는 구류심사결정서를 발급하고 24시간 내에 신문하여야 한다. 구류심사가 부적정한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류심사를 해제하여야 한다.  구류심사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사안이 복잡한 경우 직상급 지방 인민정부 공안기관 또는 출입국 변방검사기관의 비준을 거쳐 6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국적, 신원이 분명하지 아니한 외국인에 대한 구류심사 기간은 그 국적, 신원이 확인된 날로부터 기산된다.  **제61조** 외국인이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가 있는 경우에는 구류심사를 적용하지 아니하되 그 활동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1) 엄중한 질병에 걸린 경우  (2) 임신하거나 만 1세 미만의 자기 영아를 수유하는 경우  (3) 만 16세 미만이거나 만 70세인 경우  (4) 구류심사에 적용하지 아니하는 기타 상황.  활동범위가 제한된 외국인은 요구에 따라 심사를 받아야 하며, 공안기관의 비준이 없이는 한정 구역을 떠날 수 없다. 활동범위를 제한하는 기한은 6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국적, 신원이 분명하지 아니한 외국인의 활동범위 제한기간은 그 국적, 신원이 확인된 날로부터 기산된다.  **제62조** 외국인이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가 있는 경우에는 송환시킨다.  (1) 출국제한 처벌을 받고도 규정한 기한 내에 출국하지 아니한 경우  (2) 입국금지 사정이 있는 경우  (3) 불법 거류, 불법 취업한 경우  (4) 이 법 또는 기타 법률, 행정법규를 위반하여 송환이 필요한 경우.  기타 경외인원이 전 항에서 열거한 상황중의 하나가 있는 경우 법에 따라 송환시킬 수 있다.  피송환자는 송환된 날로부터 1~5년 내에 입국이 금지된다.  **제63조** 구류심사를 받거나 송환시키기로 결정하였으나 바로 집행할 수 없는 인원은 구류소나 송환 장소에 구류하여야 한다.  **제64조** 외국인이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그에 대하여 실시한 계속 신문, 구류심사, 활동범위 제한, 송환조치에 불복하는 경우 법에 따라 행정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당해 행정재심의 결정은 최종 결정으로 된다.  기타 경외인원이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그에 대하여 실시한 송환조치에 불복하여 신청하는 행정재심의는 전 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5조** 법에 따라 출국 또는 입국을 금지하는 인원에 대하여, 결정기관은 지체 없이 규정에 따라 출입국 변방검사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출국, 입국금지 사유가 없어진 경우 결정기관은 지체 없이 출국, 입국 금지결정을 취소하고 출입국 변방검사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66조** 국가안전과 출입국 관리질서 유지에 필요한 경우 출입국 변방검사기관은 출입국 인원에 대한 인신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인신검사는 검사대상과 같은 성별의 2명 변방 검사요원이 진행하여야 한다.  **제67조** 사증, 외국인 체류 또는 거류증명서 등 출입국 증명서가 훼손, 분실, 도난당하거나 또는 발급 후 증명서 소지자가 발급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등의 상황이 있는 경우 증명서 발급기관은 당해 출입국 증명서를 폐지시킬 수 있다.  위조, 변조, 사취하거나 또는 증명서 발급기관이 폐지를 선고한 출입국증명서는 무효하다.  공안기관은 전 항에서 규정하였거나 또는 타인이 도용한 출입국증명서를 말소하거나 몰수한다.  **제68조** 공안기관은 타인의 불법 출입국 조직, 운송, 협조에 사용된 교통운송수단, 사건의 심의 증거로 되는 물품을 압류할 수 있다.  공안기관은 사출한 금지물품, 국가기밀과 관련되는 문건, 자료, 그리고 출입국 관리 위반활동에 사용한 수단 등을 압류하고 관련 법률, 행정법규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69조** 출입국증명서의 진위는 증명서 발급기관, 출입국 변방검사기관 또는 공안기관 출입국관리기구에서 인정한다.  **제7장 법적 책임**  **제70조** 이 장에서 별도로 규정한 이외에 이 장에서 규정한 행정처벌은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공안기관 또는 출입국 변방검사기관에서 결정한다. 그중 경고 또는 5,000위안 이하의 처벌은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공안기관 출입국관리기구에서 결정할 수 있다.  **제71조**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1,000위안 이상, 5,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사안이 심각한 경우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는 동시에 2,000위안 이상, 1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위조, 변조, 사취한 출입국증명서를 소지하고 출입국을 한 경우  (2) 타인의 출입국증명서를 도용하여 출입국을 한 경우  (3) 출입국 변방검사를 도피한 경우  (4) 기타 방식으로 불법 출입국한 경우.  **제72조** 타인의 불법 출입국을 협조한 경우 2,000위안 이상, 1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사안이 심각한 경우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는 동시에 5,000위안 이상, 2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불법소득이 있는 경우 불법소득을 몰수한다.  단위에 전 항의 행위가 있는 경우 10,000위안 이상, 5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불법소득이 있는 경우 불법소득을 몰수하는 동시에 직접 책임을 지는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 책임인원에게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73조** 허위를 날조하여 사증, 체류 또는 거류증명서 등 출입국 증명서를 사취한 경우 2,000위안 이상, 5,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사안이 심각한 경우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동시에 5,000위안 이상, 2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단위에 전 항의 행위가 있는 경우 10,000위안 이상, 50,000위안 벌금을 부과하며, 동시에 직접 책임을 지는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 책임인원에게 전 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74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외국인에게 초청장이나 기타 신청서류를 제공한 경우 5,000위안 이상, 1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불법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소득을 몰수하고 동시에 그가 초청한 외국인의 출국비용을 부담하도록 명령한다.  단위에 전 항의 행위가 있는 경우 10,000위안 이상, 5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불법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소득을 몰수하는 동시에 그가 초청한 외국인의 출국비용을 부담하도록 명령하며, 이에 직접 책임을 지는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 책임인원에 대하여는 전 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75조** 중국공민이 출국 후 불법으로 기타 국가나 지역에 진입하여 송환된 경우 출입국 변방검사기관은 그 출입국증명서를 몰수하여야 하며, 출입국증명서 발급기관은 그가 송환된 날로부터 6개월 내지 3년 이내에 출입국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제76조**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경고를 주며, 동시에 2,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외국인이 공안기관의 출입국증명서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2) 외국인이 거류증명서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3) 규정에 따라 외국인의 출생등기, 사망신고 수속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외국인 거류증명서 등기사항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규정에 따라 변경하지 아니한 경우  (5) 중국 경내의 외국인이 타인의 출입국증명서를 도용한 경우  (6) 이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여관이 규정에 따라 외국인의 숙박등기를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규정에 따라 공안기관에 외국인 숙박등기 정보를 송부하지 아니한 경우 경고를 주며,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1,000위안 이상, 5,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77조** 외국인이 허가를 받지 않고 제멋대로 외국인의 진입을 금지하는 구역에 진입한 경우 지체 없이 떠나도록 명령하며, 사안이 심각한 경우 5일 이상, 10일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외국인이 불법으로 취득한 문자기록, 시청자료, 전자데이터 및 기타 물품은 몰수하거나 소각하며, 그에 사용한 수단은 몰수한다.  외국인, 외국기구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의 기한부 철거결정을 집행하지 않는 경우 경고를 주고 강제 철거시키며, 사안이 심각한 경우 해당 책임인원에게 5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한다.  **제78조** 불법거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경고를 주며, 사안이 심각한 경우 불법거류 일에 따라 매일 500위안, 총액이 10,000위안을 초과하지 않는 벌금을 부과하거나 또는 5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한다.  감호인 또는 기타 감호책임이 있는 자가 감호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만 16세 미만의 외국인의 불법거류를 초래한 경우 감호인 또는 기타 감호책임을 지는 자에게 경고를 주며, 동시에 1,000위안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79조** 불법 입국, 불법거류 외국인을 수용하거나 은닉한 경우, 불법입국, 불법거류 외국인의 검사 도피를 협조하였거나 또는 법을 어기고 불법거류 외국인에게 출입국증명서를 제공한 경우 2,000위안 이상, 1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사안이 심각한 경우 5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는 동시에 5,000위안 이상, 2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불법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소득을 몰수한다.  단위에 전 항의 행위가 있는 경우 10,000위안 이상, 5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불법소득이 있는 경우 불법소득을 몰수하는 동시에 이에 직접 책임을 지는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 책임인원에게 전 항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80조** 외국인이 불법 취업한 경우 5,000위안 이상, 2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사안이 심각한 경우 5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는 동시에 5,000위안 이상, 2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외국인의 불법취업을 소개한 경우 개인에게는 소개한 인수에 따라 일인당 5,000위안, 총액이 50,000위안 미만인 벌금을 부과하며, 단위에 대해서는 소개한 인수에 따라 일인당 5,000위안, 총액이 10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불법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소득을 몰수한다.  외국인을 불법 채용한 경우 그 채용 인수에 따라 일인당 10,000위안, 총액이 10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불법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소득을 몰수한다.  **제81조** 외국인이 체류 또는 거류 사유에 어긋나는 활동에 종사하거나 기타의 중국 법률, 법규를 위반하여 중국 경내의 계속 체류 또는 거류에 부적합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한부 출국시킬 수 있다.  외국인이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안이 심각하나 범죄 구성에는 이르지 아니한 경우 공안부는 강제퇴거 시킬 수 있다. 공안부의 처벌결정은 최종 결정이다.  강제퇴거를 당한 외국인은 강제퇴거로 추방된 날로부터 10년 내에는 다시 입국하지 못한다.  **제82조**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경고를 주고 동시에 2,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출입국항 한정구역 관리질서를 어지럽힌 경우  (2) 외국선원 및 그 수행가족이 임시 입국수속을 하지 않고 상륙한 경우  (3) 등선증명서를 취득하지 않고 외국선박을 승선하거나 하선한 경우.  전 항 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동시에 5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할 수 있다.  **제83조** 교통운송수단이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그 책임자에게 5,000위안 이상, 5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 검사허가를 받지 않고 제멋대로 출입국을 하거나 또는 비준을 거치지 않고 제멋대로 출입국항을 변경한 경우  (2) 규정에 따라 직원, 여객, 화물 또는 물품 등의 정보를 여실하게 신고하지 않았거나 또는 출입국 변방검사 협조를 거부한 경우  (3) 출입국 변방검사 규정을 어기고 승무원이나 승객이 오르내리거나 화물 또는 물품을 적재한 경우.  출입국 교통운송수단에 출입국이 금지된 인원을 태우고 출입국을 한 경우 그 탑승 인수에 따라 일인당 5,000위안 이상, 1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교통운송수단 책임자가 이미 합리적인 예방조치를 취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84조** 교통운송수단이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그 책임자에게 2,000위안 이상, 2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 중국 또는 외국선박이 허가 없이 제멋대로 외국선박에 댄 경우  (2) 외국선박, 항공기가 중국 경내에서 규정한 노선, 항로에 따라 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출입국 선박, 항공기가 규정을 위반하고 대외개방 출입국항 그 밖의 지역에 진입한 경우.  **제85조** 출입국 관리직책을 수행하는 업무직원이 아래의 행위중의 하나가 있는 경우 법에 따라 처벌을 한다.  (1) 법률, 행정법규를 위반하고 규정한 요건에 부합되지 않는 외국인에게 사증, 외국인의 체류 또는 거류증명서 등의 출입국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2) 법률, 행정법규를 위반하고 규정한 요건에 부합되지 않는 인원이나 교통운송수단을 심사하지 않고 그 출입국을 통과시킨 경우  (3) 출입국 관리업무 중에서 얻은 개인정보를 누설하여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한 경우  (4) 규정에 따라 의법 수취한 비용, 몰수한 벌금 및 몰수한 불법소득, 불법재물을 국고에 상납하지 아니한 경우  (5) 벌금이나 몰수, 압류한 벌금이나 수취한 비용을 착복, 점용, 유용한 경우  (6)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에 태만하거나 부정을 행하여 법에 따라 법정 직책을 수행하지 아니한 기타 행위.  **제86조** 출입국관리 위반행위에 대하여 5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 출입국 변방검사기관은 당장에서 처벌결정을 내릴 수 있다.  **제87조** 출입국 관리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 처벌대상자는 처벌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내에 지정된 은행에서 벌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처벌대상자가 소재지에 고정주소가 없고 당장에서 벌금을 수취하지 않는 다면 사후에 집행하기 어렵거나 또는 출입국항에서 지정은행에 벌금을 납부하기에 확실히 어려운 경우에는 당장에서 수취할 수 있다.  **제88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범죄를 구성한 경우 법에 따라 형사상 책임을 추궁한다.  **제8장 부 칙**  **제89조** 이 법 용어의 함의는 아래와 같다.  출국이란 중국 내륙에서 기타 국가나 지역으로 가거나, 중국 내륙에서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로 가거나 중국 대륙에서 대만지역으로 가는 것을 가리킨다.  입국이란 기타 국가나 지역에서 중국 내륙에 진입하거나,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에서 중국 내륙에 진입하거나 또는 대만지역에서 중국 대륙에 진입하는 것을 가리킨다.  외국인이란 중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가리킨다.  **제90조**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인근 국가와 접양한 성, 자치구는 중국이 유관 국가와 체결한 변경관리협정에 따라 지방성 법규, 지방정부 규장을 제정하여 양국 변경 인접지역의 거주민의 왕래를 규정할 수 있다.  **제91조** 외국의 중국주재 외교대표기구, 영사기구 구성원 및 특권과 면허를 향유하는 기타 외국인의 출입국 및 체류나 거류 관리에 대하여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 규정을 따른다.  **제92조** 외국인이 사증 또는 외국인의 체류나 거류증명서 등 출입국 증명서를 신청하거나 또는 증명서 연기,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사증, 증명서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93조** 이 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 출입국 관리법》과 《중화인민공화국 공민 출입국 관리법》은 동일자로 폐지한다. |  | **中华人民共和国出境入境管理法**  （2012年6月30日第十一届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第二十七次会议通过）    **第一章 总 则**  **第一条** 为了规范出境入境管理，维护中华人民共和国的主权、安全和社会秩序，促进对外交往和对外开放，制定本法。  **第二条** 中国公民出境入境、外国人入境出境、外国人在中国境内停留居留的管理，以及交通运输工具出境入境的边防检查，适用本法。  **第三条** 国家保护中国公民出境入境合法权益。  在中国境内的外国人的合法权益受法律保护。在中国境内的外国人应当遵守中国法律，不得危害中国国家安全、损害社会公共利益、破坏社会公共秩序。  **第四条** 公安部、外交部按照各自职责负责有关出境入境事务的管理。  中华人民共和国驻外使馆、领馆或者外交部委托的其他驻外机构（以下称驻外签证机关）负责在境外签发外国人入境签证。出入境边防检查机关负责实施出境入境边防检查。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公安机关及其出入境管理机构负责外国人停留居留管理。  公安部、外交部可以在各自职责范围内委托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公安机关出入境管理机构、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外事部门受理外国人入境、停留居留申请。  公安部、外交部在出境入境事务管理中，应当加强沟通配合，并与国务院有关部门密切合作，按照各自职责分工，依法行使职权，承担责任。  **第五条** 国家建立统一的出境入境管理信息平台，实现有关管理部门信息共享。  **第六条** 国家在对外开放的口岸设立出入境边防检查机关。  中国公民、外国人以及交通运输工具应当从对外开放的口岸出境入境，特殊情况下，可以从国务院或者国务院授权的部门批准的地点出境入境。出境入境人员和交通运输工具应当接受出境入境边防检查。  出入境边防检查机关负责对口岸限定区域实施管理。根据维护国家安全和出境入境管理秩序的需要，出入境边防检查机关可以对出境入境人员携带的物品实施边防检查。必要时，出入境边防检查机关可以对出境入境交通运输工具载运的货物实施边防检查，但是应当通知海关。  **第七条** 经国务院批准，公安部、外交部根据出境入境管理的需要，可以对留存出境入境人员的指纹等人体生物识别信息作出规定。  外国政府对中国公民签发签证、出境入境管理有特别规定的，中国政府可以根据情况采取相应的对等措施。  **第八条** 履行出境入境管理职责的部门和机构应当切实采取措施，不断提升服务和管理水平，公正执法，便民高效，维护安全、便捷的出境入境秩序。    **第二章 中国公民出境入境**  **第九条** 中国公民出境入境，应当依法申请办理护照或者其他旅行证件。  中国公民前往其他国家或者地区，还需要取得前往国签证或者其他入境许可证明。但是，中国政府与其他国家政府签订互免签证协议或者公安部、外交部另有规定的除外。  中国公民以海员身份出境入境和在国外船舶上从事工作的，应当依法申请办理海员证。  **第十条** 中国公民往来内地与香港特别行政区、澳门特别行政区，中国公民往来大陆与台湾地区，应当依法申请办理通行证件，并遵守本法有关规定。具体管理办法由国务院规定。  **第十一条** 中国公民出境入境，应当向出入境边防检查机关交验本人的护照或者其他旅行证件等出境入境证件，履行规定的手续，经查验准许，方可出境入境。  具备条件的口岸，出入境边防检查机关应当为中国公民出境入境提供专用通道等便利措施。  **第十二条** 中国公民有下列情形之一的，不准出境：  （一）未持有效出境入境证件或者拒绝、逃避接受边防检查的；  （二）被判处刑罚尚未执行完毕或者属于刑事案件被告人、犯罪嫌疑人的；  （三）有未了结的民事案件，人民法院决定不准出境的；  （四）因妨害国（边）境管理受到刑事处罚或者因非法出境、非法居留、非法就业被其他国家或者地区遣返，未满不准出境规定年限的；  （五）可能危害国家安全和利益，国务院有关主管部门决定不准出境的；  （六）法律、行政法规规定不准出境的其他情形。  **第十三条** 定居国外的中国公民要求回国定居的，应当在入境前向中华人民共和国驻外使馆、领馆或者外交部委托的其他驻外机构提出申请，也可以由本人或者经由国内亲属向拟定居地的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侨务部门提出申请。  **第十四条** 定居国外的中国公民在中国境内办理金融、教育、医疗、交通、电信、社会保险、财产登记等事务需要提供身份证明的，可以凭本人的护照证明其身份。    **第三章 外国人入境出境**  **第一节 签 证**  **第十五条** 外国人入境，应当向驻外签证机关申请办理签证，但是本法另有规定的除外。  **第十六条** 签证分为外交签证、礼遇签证、公务签证、普通签证。  对因外交、公务事由入境的外国人，签发外交、公务签证；对因身份特殊需要给予礼遇的外国人，签发礼遇签证。外交签证、礼遇签证、公务签证的签发范围和签发办法由外交部规定。  对因工作、学习、探亲、旅游、商务活动、人才引进等非外交、公务事由入境的外国人，签发相应类别的普通签证。普通签证的类别和签发办法由国务院规定。  **第十七条** 签证的登记项目包括：签证种类，持有人姓名、性别、出生日期、入境次数、入境有效期、停留期限，签发日期、地点，护照或者其他国际旅行证件号码等。  **第十八条** 外国人申请办理签证，应当向驻外签证机关提交本人的护照或者其他国际旅行证件，以及申请事由的相关材料，按照驻外签证机关的要求办理相关手续、接受面谈。  **第十九条** 外国人申请办理签证需要提供中国境内的单位或者个人出具的邀请函件的，申请人应当按照驻外签证机关的要求提供。出具邀请函件的单位或者个人应当对邀请内容的真实性负责。  **第二十条** 出于人道原因需要紧急入境，应邀入境从事紧急商务、工程抢修或者具有其他紧急入境需要并持有有关主管部门同意在口岸申办签证的证明材料的外国人，可以在国务院批准办理口岸签证业务的口岸，向公安部委托的口岸签证机关（以下简称口岸签证机关）申请办理口岸签证。  旅行社按照国家有关规定组织入境旅游的，可以向口岸签证机关申请办理团体旅游签证。  外国人向口岸签证机关申请办理签证，应当提交本人的护照或者其他国际旅行证件，以及申请事由的相关材料，按照口岸签证机关的要求办理相关手续，并从申请签证的口岸入境。  口岸签证机关签发的签证一次入境有效，签证注明的停留期限不得超过三十日。  **第二十一条** 外国人有下列情形之一的，不予签发签证：  （一）被处驱逐出境或者被决定遣送出境，未满不准入境规定年限的；  （二）患有严重精神障碍、传染性肺结核病或者有可能对公共卫生造成重大危害的其他传染病的；  （三）可能危害中国国家安全和利益、破坏社会公共秩序或者从事其他违法犯罪活动的；  （四）在申请签证过程中弄虚作假或者不能保障在中国境内期间所需费用的；  （五）不能提交签证机关要求提交的相关材料的；  （六）签证机关认为不宜签发签证的其他情形。  对不予签发签证的，签证机关可以不说明理由。  **第二十二条** 外国人有下列情形之一的，可以免办签证：  （一）根据中国政府与其他国家政府签订的互免签证协议，属于免办签证人员的；  （二）持有效的外国人居留证件的；  （三）持联程客票搭乘国际航行的航空器、船舶、列车从中国过境前往第三国或者地区，在中国境内停留不超过二十四小时且不离开口岸，或者在国务院批准的特定区域内停留不超过规定时限的；  （四）国务院规定的可以免办签证的其他情形。  **第二十三条** 有下列情形之一的外国人需要临时入境的，应当向出入境边防检查机关申请办理临时入境手续：  （一）外国船员及其随行家属登陆港口所在城市的；  （二）本法第二十二条第三项规定的人员需要离开口岸的；  （三）因不可抗力或者其他紧急原因需要临时入境的。  临时入境的期限不得超过十五日。  对申请办理临时入境手续的外国人，出入境边防检查机关可以要求外国人本人、载运其入境的交通运输工具的负责人或者交通运输工具出境入境业务代理单位提供必要的保证措施。    **第二节 入境出境**  **第二十四条** 外国人入境，应当向出入境边防检查机关交验本人的护照或者其他国际旅行证件、签证或者其他入境许可证明，履行规定的手续，经查验准许，方可入境。  **第二十五条** 外国人有下列情形之一的，不准入境：  （一）未持有效出境入境证件或者拒绝、逃避接受边防检查的；  （二）具有本法第二十一条第一款第一项至第四项规定情形的；  （三）入境后可能从事与签证种类不符的活动的；  （四）法律、行政法规规定不准入境的其他情形。  对不准入境的，出入境边防检查机关可以不说明理由。  **第二十六条** 对未被准许入境的外国人，出入境边防检查机关应当责令其返回；对拒不返回的，强制其返回。外国人等待返回期间，不得离开限定的区域。  **第二十七条** 外国人出境，应当向出入境边防检查机关交验本人的护照或者其他国际旅行证件等出境入境证件，履行规定的手续，经查验准许，方可出境。  **第二十八条** 外国人有下列情形之一的，不准出境：  （一）被判处刑罚尚未执行完毕或者属于刑事案件被告人、犯罪嫌疑人的，但是按照中国与外国签订的有关协议，移管被判刑人的除外；  （二）有未了结的民事案件，人民法院决定不准出境的；  （三）拖欠劳动者的劳动报酬，经国务院有关部门或者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决定不准出境的；  （四）法律、行政法规规定不准出境的其他情形。    **第四章 外国人停留居留**  **第一节 停留居留**  **第二十九条** 外国人所持签证注明的停留期限不超过一百八十日的，持证人凭签证并按照签证注明的停留期限在中国境内停留。  需要延长签证停留期限的，应当在签证注明的停留期限届满七日前向停留地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公安机关出入境管理机构申请，按照要求提交申请事由的相关材料。经审查，延期理由合理、充分的，准予延长停留期限；不予延长停留期限的，应当按期离境。  延长签证停留期限，累计不得超过签证原注明的停留期限。  **第三十条** 外国人所持签证注明入境后需要办理居留证件的，应当自入境之日起三十日内，向拟居留地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公安机关出入境管理机构申请办理外国人居留证件。  申请办理外国人居留证件，应当提交本人的护照或者其他国际旅行证件，以及申请事由的相关材料，并留存指纹等人体生物识别信息。公安机关出入境管理机构应当自收到申请材料之日起十五日内进行审查并作出审查决定，根据居留事由签发相应类别和期限的外国人居留证件。  外国人工作类居留证件的有效期最短为九十日，最长为五年；非工作类居留证件的有效期最短为一百八十日，最长为五年。  **第三十一条** 外国人有下列情形之一的，不予签发外国人居留证件：  （一）所持签证类别属于不应办理外国人居留证件的；  （二）在申请过程中弄虚作假的；  （三）不能按照规定提供相关证明材料的；  （四）违反中国有关法律、行政法规，不适合在中国境内居留的；  （五）签发机关认为不宜签发外国人居留证件的其他情形。  符合国家规定的专门人才、投资者或者出于人道等原因确需由停留变更为居留的外国人，经设区的市级以上地方人民政府公安机关出入境管理机构批准可以办理外国人居留证件。  **第三十二条** 在中国境内居留的外国人申请延长居留期限的，应当在居留证件有效期限届满三十日前向居留地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公安机关出入境管理机构提出申请，按照要求提交申请事由的相关材料。经审查，延期理由合理、充分的，准予延长居留期限；不予延长居留期限的，应当按期离境。  **第三十三条** 外国人居留证件的登记项目包括：持有人姓名、性别、出生日期、居留事由、居留期限，签发日期、地点，护照或者其他国际旅行证件号码等。  外国人居留证件登记事项发生变更的，持证件人应当自登记事项发生变更之日起十日内向居留地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公安机关出入境管理机构申请办理变更。  **第三十四条** 免办签证入境的外国人需要超过免签期限在中国境内停留的，外国船员及其随行家属在中国境内停留需要离开港口所在城市，或者具有需要办理外国人停留证件其他情形的，应当按照规定办理外国人停留证件。  外国人停留证件的有效期最长为一百八十日。  **第三十五条** 外国人入境后，所持的普通签证、停留居留证件损毁、遗失、被盗抢或者有符合国家规定的事由需要换发、补发的，应当按照规定向停留居留地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公安机关出入境管理机构提出申请。  **第三十六条** 公安机关出入境管理机构作出的不予办理普通签证延期、换发、补发，不予办理外国人停留居留证件、不予延长居留期限的决定为最终决定。  **第三十七条** 外国人在中国境内停留居留，不得从事与停留居留事由不相符的活动，并应当在规定的停留居留期限届满前离境。  **第三十八条** 年满十六周岁的外国人在中国境内停留居留，应当随身携带本人的护照或者其他国际旅行证件，或者外国人停留居留证件，接受公安机关的查验。  在中国境内居留的外国人，应当在规定的时间内到居留地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公安机关交验外国人居留证件。  **第三十九条** 外国人在中国境内旅馆住宿的，旅馆应当按照旅馆业治安管理的有关规定为其办理住宿登记，并向所在地公安机关报送外国人住宿登记信息。  外国人在旅馆以外的其他住所居住或者住宿的，应当在入住后二十四小时内由本人或者留宿人，向居住地的公安机关办理登记。  **第四十条** 在中国境内出生的外国婴儿，其父母或者代理人应当在婴儿出生六十日内，持该婴儿的出生证明到父母停留居留地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公安机关出入境管理机构为其办理停留或者居留登记。  外国人在中国境内死亡的，其家属、监护人或者代理人，应当按照规定，持该外国人的死亡证明向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公安机关出入境管理机构申报，注销外国人停留居留证件。  **第四十一条** 外国人在中国境内工作，应当按照规定取得工作许可和工作类居留证件。任何单位和个人不得聘用未取得工作许可和工作类居留证件的外国人。  外国人在中国境内工作管理办法由国务院规定。  **第四十二条** 国务院人力资源社会保障主管部门、外国专家主管部门会同国务院有关部门根据经济社会发展需要和人力资源供求状况制定并定期调整外国人在中国境内工作指导目录。  国务院教育主管部门会同国务院有关部门建立外国留学生勤工助学管理制度，对外国留学生勤工助学的岗位范围和时限作出规定。  **第四十三条** 外国人有下列行为之一的，属于非法就业：  （一）未按照规定取得工作许可和工作类居留证件在中国境内工作的；  （二）超出工作许可限定范围在中国境内工作的；  （三）外国留学生违反勤工助学管理规定，超出规定的岗位范围或者时限在中国境内工作的。  **第四十四条** 根据维护国家安全、公共安全的需要，公安机关、国家安全机关可以限制外国人、外国机构在某些地区设立居住或者办公场所；对已经设立的，可以限期迁离。  未经批准，外国人不得进入限制外国人进入的区域。  **第四十五条** 聘用外国人工作或者招收外国留学生的单位，应当按照规定向所在地公安机关报告有关信息。  公民、法人或者其他组织发现外国人有非法入境、非法居留、非法就业情形的，应当及时向所在地公安机关报告。  **第四十六条** 申请难民地位的外国人，在难民地位甄别期间，可以凭公安机关签发的临时身份证明在中国境内停留；被认定为难民的外国人，可以凭公安机关签发的难民身份证件在中国境内停留居留。    **第二节 永久居留**  **第四十七条** 对中国经济社会发展作出突出贡献或者符合其他在中国境内永久居留条件的外国人，经本人申请和公安部批准，取得永久居留资格。  外国人在中国境内永久居留的审批管理办法由公安部、外交部会同国务院有关部门规定。  **第四十八条** 取得永久居留资格的外国人，凭永久居留证件在中国境内居留和工作，凭本人的护照和永久居留证件出境入境。  **第四十九条** 外国人有下列情形之一的，由公安部决定取消其在中国境内永久居留资格：  （一）对中国国家安全和利益造成危害的；  （二）被处驱逐出境的；  （三）弄虚作假骗取在中国境内永久居留资格的；  （四）在中国境内居留未达到规定时限的；  （五）不适宜在中国境内永久居留的其他情形。  **第五章 交通运输工具出境入境边防检查**  **第五十条** 出境入境交通运输工具离开、抵达口岸时，应当接受边防检查。对交通运输工具的入境边防检查，在其最先抵达的口岸进行；对交通运输工具的出境边防检查，在其最后离开的口岸进行。特殊情况下，可以在有关主管机关指定的地点进行。  出境的交通运输工具自出境检查后至出境前，入境的交通运输工具自入境后至入境检查前，未经出入境边防检查机关按照规定程序许可，不得上下人员、装卸货物或者物品。  **第五十一条** 交通运输工具负责人或者交通运输工具出境入境业务代理单位应当按照规定提前向出入境边防检查机关报告入境、出境的交通运输工具抵达、离开口岸的时间和停留地点，如实申报员工、旅客、货物或者物品等信息。  **第五十二条** 交通运输工具负责人、交通运输工具出境入境业务代理单位应当配合出境入境边防检查，发现违反本法规定行为的，应当立即报告并协助调查处理。  入境交通运输工具载运不准入境人员的，交通运输工具负责人应当负责载离。  **第五十三条** 出入境边防检查机关按照规定对处于下列情形之一的出境入境交通运输工具进行监护：  （一）出境的交通运输工具在出境边防检查开始后至出境前、入境的交通运输工具在入境后至入境边防检查完成前；  （二）外国船舶在中国内河航行期间；  （三）有必要进行监护的其他情形。  **第五十四条** 因装卸物品、维修作业、参观访问等事由需要上下外国船舶的人员，应当向出入境边防检查机关申请办理登轮证件。  中国船舶与外国船舶或者外国船舶之间需要搭靠作业的，应当由船长或者交通运输工具出境入境业务代理单位向出入境边防检查机关申请办理船舶搭靠手续。  **第五十五条** 外国船舶、航空器在中国境内应当按照规定的路线、航线行驶。  出境入境的船舶、航空器不得驶入对外开放口岸以外地区。因不可预见的紧急情况或者不可抗力驶入的，应当立即向就近的出入境边防检查机关或者当地公安机关报告，并接受监护和管理。  **第五十六条** 交通运输工具有下列情形之一的，不准出境入境；已经驶离口岸的，可以责令返回：  （一）离开、抵达口岸时，未经查验准许擅自出境入境的；  （二）未经批准擅自改变出境入境口岸的；  （三）涉嫌载有不准出境入境人员，需要查验核实的；  （四）涉嫌载有危害国家安全、利益和社会公共秩序的物品，需要查验核实的；  （五）拒绝接受出入境边防检查机关管理的其他情形。  前款所列情形消失后，出入境边防检查机关对有关交通运输工具应当立即放行。  **第五十七条** 从事交通运输工具出境入境业务代理的单位，应当向出入境边防检查机关备案。从事业务代理的人员，由所在单位向出入境边防检查机关办理备案手续。    **第六章 调查和遣返**  **第五十八条** 本章规定的当场盘问、继续盘问、拘留审查、限制活动范围、遣送出境措施，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公安机关或者出入境边防检查机关实施。  **第五十九条** 对涉嫌违反出境入境管理的人员，可以当场盘问；经当场盘问，有下列情形之一的，可以依法继续盘问：  （一）有非法出境入境嫌疑的；  （二）有协助他人非法出境入境嫌疑的；  （三）外国人有非法居留、非法就业嫌疑的；  （四）有危害国家安全和利益，破坏社会公共秩序或者从事其他违法犯罪活动嫌疑的。  当场盘问和继续盘问应当依据《中华人民共和国人民警察法》规定的程序进行。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公安机关或者出入境边防检查机关需要传唤涉嫌违反出境入境管理的人员的，依照《中华人民共和国治安管理处罚法》的有关规定执行。  **第六十条** 外国人有本法第五十九条第一款规定情形之一的，经当场盘问或者继续盘问后仍不能排除嫌疑，需要作进一步调查的，可以拘留审查。  实施拘留审查，应当出示拘留审查决定书，并在二十四小时内进行询问。发现不应当拘留审查的，应当立即解除拘留审查。  拘留审查的期限不得超过三十日；案情复杂的，经上一级地方人民政府公安机关或者出入境边防检查机关批准可以延长至六十日。对国籍、身份不明的外国人，拘留审查期限自查清其国籍、身份之日起计算。  **第六十一条** 外国人有下列情形之一的，不适用拘留审查，可以限制其活动范围：  （一）患有严重疾病的；  （二）怀孕或者哺乳自己不满一周岁婴儿的；  （三）未满十六周岁或者已满七十周岁的；  （四）不宜适用拘留审查的其他情形。  被限制活动范围的外国人，应当按照要求接受审查，未经公安机关批准，不得离开限定的区域。限制活动范围的期限不得超过六十日。对国籍、身份不明的外国人，限制活动范围期限自查清其国籍、身份之日起计算。  **第六十二条** 外国人有下列情形之一的，可以遣送出境：  （一）被处限期出境，未在规定期限内离境的；  （二）有不准入境情形的；  （三）非法居留、非法就业的；  （四）违反本法或者其他法律、行政法规需要遣送出境的。  其他境外人员有前款所列情形之一的，可以依法遣送出境。  被遣送出境的人员，自被遣送出境之日起一至五年内不准入境。  **第六十三条** 被拘留审查或者被决定遣送出境但不能立即执行的人员，应当羁押在拘留所或者遣返场所。  **第六十四条** 外国人对依照本法规定对其实施的继续盘问、拘留审查、限制活动范围、遣送出境措施不服的，可以依法申请行政复议，该行政复议决定为最终决定。  其他境外人员对依照本法规定对其实施的遣送出境措施不服，申请行政复议的，适用前款规定。  **第六十五条** 对依法决定不准出境或者不准入境的人员，决定机关应当按照规定及时通知出入境边防检查机关；不准出境、入境情形消失的，决定机关应当及时撤销不准出境、入境决定，并通知出入境边防检查机关。  **第六十六条** 根据维护国家安全和出境入境管理秩序的需要，必要时，出入境边防检查机关可以对出境入境的人员进行人身检查。人身检查应当由两名与受检查人同性别的边防检查人员进行。  **第六十七条** 签证、外国人停留居留证件等出境入境证件发生损毁、遗失、被盗抢或者签发后发现持证人不符合签发条件等情形的，由签发机关宣布该出境入境证件作废。  伪造、变造、骗取或者被证件签发机关宣布作废的出境入境证件无效。  公安机关可以对前款规定的或被他人冒用的出境入境证件予以注销或者收缴。  **第六十八条** 对用于组织、运送、协助他人非法出境入境的交通运输工具，以及需要作为办案证据的物品，公安机关可以扣押。  对查获的违禁物品，涉及国家秘密的文件、资料以及用于实施违反出境入境管理活动的工具等，公安机关应当予以扣押，并依照相关法律、行政法规规定处理。  **第六十九条** 出境入境证件的真伪由签发机关、出入境边防检查机关或者公安机关出入境管理机构认定。    **第七章 法律责任**  **第七十条** 本章规定的行政处罚，除本章另有规定外，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公安机关或者出入境边防检查机关决定；其中警告或者五千元以下罚款，可以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公安机关出入境管理机构决定。  **第七十一条** 有下列行为之一的，处一千元以上五千元以下罚款；情节严重的，处五日以上十日以下拘留，可以并处二千元以上一万元以下罚款：  （一）持用伪造、变造、骗取的出境入境证件出境入境的；  （二）冒用他人出境入境证件出境入境的；  （三）逃避出境入境边防检查的；  （四）以其他方式非法出境入境的。  **第七十二条** 协助他人非法出境入境的，处二千元以上一万元以下罚款；情节严重的，处十日以上十五日以下拘留，并处五千元以上二万元以下罚款，有违法所得的，没收违法所得。  单位有前款行为的，处一万元以上五万元以下罚款，有违法所得的，没收违法所得，并对其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照前款规定予以处罚。  **第七十三条** 弄虚作假骗取签证、停留居留证件等出境入境证件的，处二千元以上五千元以下罚款；情节严重的，处十日以上十五日以下拘留，并处五千元以上二万元以下罚款。  单位有前款行为的，处一万元以上五万元以下罚款，并对其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照前款规定予以处罚。  **第七十四条** 违反本法规定，为外国人出具邀请函件或者其他申请材料的，处五千元以上一万元以下罚款，有违法所得的，没收违法所得，并责令其承担所邀请外国人的出境费用。  单位有前款行为的，处一万元以上五万元以下罚款，有违法所得的，没收违法所得，并责令其承担所邀请外国人的出境费用，对其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照前款规定予以处罚。  **第七十五条** 中国公民出境后非法前往其他国家或者地区被遣返的，出入境边防检查机关应当收缴其出境入境证件，出境入境证件签发机关自其被遣返之日起六个月至三年以内不予签发出境入境证件。  **第七十六条** 有下列情形之一的，给予警告，可以并处二千元以下罚款：  （一）外国人拒不接受公安机关查验其出境入境证件的；  （二）外国人拒不交验居留证件的；  （三）未按照规定办理外国人出生登记、死亡申报的；  （四）外国人居留证件登记事项发生变更，未按照规定办理变更的；  （五）在中国境内的外国人冒用他人出境入境证件的；  （六）未按照本法第三十九条第二款规定办理登记的。  旅馆未按照规定办理外国人住宿登记的，依照《中华人民共和国治安管理处罚法》的有关规定予以处罚；未按照规定向公安机关报送外国人住宿登记信息的，给予警告；情节严重的，处一千元以上五千元以下罚款。  **第七十七条** 外国人未经批准，擅自进入限制外国人进入的区域，责令立即离开；情节严重的，处五日以上十日以下拘留。对外国人非法获取的文字记录、音像资料、电子数据和其他物品，予以收缴或者销毁，所用工具予以收缴。  外国人、外国机构违反本法规定，拒不执行公安机关、国家安全机关限期迁离决定的，给予警告并强制迁离；情节严重的，对有关责任人员处五日以上十五日以下拘留。  **第七十八条** 外国人非法居留的，给予警告；情节严重的，处每非法居留一日五百元，总额不超过一万元的罚款或者五日以上十五日以下拘留。  因监护人或者其他负有监护责任的人未尽到监护义务，致使未满十六周岁的外国人非法居留的，对监护人或者其他负有监护责任的人给予警告，可以并处一千元以下罚款。  **第七十九条** 容留、藏匿非法入境、非法居留的外国人，协助非法入境、非法居留的外国人逃避检查，或者为非法居留的外国人违法提供出境入境证件的，处二千元以上一万元以下罚款；情节严重的，处五日以上十五日以下拘留，并处五千元以上二万元以下罚款，有违法所得的，没收违法所得。  单位有前款行为的，处一万元以上五万元以下罚款，有违法所得的，没收违法所得，并对其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照前款规定予以处罚。  **第八十条** 外国人非法就业的，处五千元以上二万元以下罚款；情节严重的，处五日以上十五日以下拘留，并处五千元以上二万元以下罚款。  介绍外国人非法就业的，对个人处每非法介绍一人五千元，总额不超过五万元的罚款；对单位处每非法介绍一人五千元，总额不超过十万元的罚款；有违法所得的，没收违法所得。  非法聘用外国人的，处每非法聘用一人一万元，总额不超过十万元的罚款；有违法所得的，没收违法所得。  **第八十一条** 外国人从事与停留居留事由不相符的活动，或者有其他违反中国法律、法规规定，不适宜在中国境内继续停留居留情形的，可以处限期出境。  外国人违反本法规定，情节严重，尚不构成犯罪的，公安部可以处驱逐出境。公安部的处罚决定为最终决定。  被驱逐出境的外国人，自被驱逐出境之日起十年内不准入境。  **第八十二条** 有下列情形之一的，给予警告，可以并处二千元以下罚款：  （一）扰乱口岸限定区域管理秩序的；  （二）外国船员及其随行家属未办理临时入境手续登陆的；  （三）未办理登轮证件上下外国船舶的。  违反前款第一项规定，情节严重的，可以并处五日以上十日以下拘留。  **第八十三条** 交通运输工具有下列情形之一的，对其负责人处五千元以上五万元以下罚款：  （一）未经查验准许擅自出境入境或者未经批准擅自改变出境入境口岸的；  （二）未按照规定如实申报员工、旅客、货物或者物品等信息，或者拒绝协助出境入境边防检查的；  （三）违反出境入境边防检查规定上下人员、装卸货物或者物品的。  出境入境交通运输工具载运不准出境入境人员出境入境的，处每载运一人五千元以上一万元以下罚款。交通运输工具负责人证明其已经采取合理预防措施的，可以减轻或者免予处罚。  **第八十四条** 交通运输工具有下列情形之一的，对其负责人处二千元以上二万元以下罚款：  （一）中国或者外国船舶未经批准擅自搭靠外国船舶的；  （二）外国船舶、航空器在中国境内未按照规定的路线、航线行驶的；  （三）出境入境的船舶、航空器违反规定驶入对外开放口岸以外地区的。  **第八十五条** 履行出境入境管理职责的工作人员，有下列行为之一的，依法给予处分：  （一）违反法律、行政法规，为不符合规定条件的外国人签发签证、外国人停留居留证件等出境入境证件的；  （二）违反法律、行政法规，审核验放不符合规定条件的人员或者交通运输工具出境入境的；  （三）泄露在出境入境管理工作中知悉的个人信息，侵害当事人合法权益的；  （四）不按照规定将依法收取的费用、收缴的罚款及没收的违法所得、非法财物上缴国库的；  （五）私分、侵占、挪用罚没、扣押的款物或者收取的费用的；  （六）滥用职权、玩忽职守、徇私舞弊，不依法履行法定职责的其他行为。  **第八十六条** 对违反出境入境管理行为处五百元以下罚款的，出入境边防检查机关可以当场作出处罚决定。  **第八十七条** 对违反出境入境管理行为处罚款的，被处罚人应当自收到处罚决定书之日起十五日内，到指定的银行缴纳罚款。被处罚人在所在地没有固定住所，不当场收缴罚款事后难以执行或者在口岸向指定银行缴纳罚款确有困难的，可以当场收缴。  **第八十八条** 违反本法规定，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第八章 附 则**  **第八十九条** 本法下列用语的含义：  出境，是指由中国内地前往其他国家或者地区，由中国内地前往香港特别行政区、澳门特别行政区，由中国大陆前往台湾地区。  入境，是指由其他国家或者地区进入中国内地，由香港特别行政区、澳门特别行政区进入中国内地，由台湾地区进入中国大陆。  外国人，是指不具有中国国籍的人。  **第九十条** 经国务院批准，同毗邻国家接壤的省、自治区可以根据中国与有关国家签订的边界管理协定制定地方性法规、地方政府规章，对两国边境接壤地区的居民往来作出规定。  **第九十一条** 外国驻中国的外交代表机构、领事机构成员以及享有特权和豁免的其他外国人，其入境出境及停留居留管理，其他法律另有规定的，依照其规定。  **第九十二条** 外国人申请办理签证、外国人停留居留证件等出境入境证件或者申请办理证件延期、变更的，应当按照规定缴纳签证费、证件费。  **第九十三条** 本法自２０１３年７月１日起施行。《中华人民共和国外国人入境出境管理法》和《中华人民共和国公民出境入境管理法》同时废止。 |